

(제3-1호)

### 행정처분·경영지도·경영관리·적기시정조치

1. 조치 대상 법인명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 행정처분 등의 종류	행정처분
3. 행정처분 등의 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7조, 부칙 제2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39, 41
4. 행정처분 등의 원인	·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 ·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5. 행정처분 등의 내용	· 증권발행제한 2개월 · 감사인지정 1년
6. 기타	제43기(14.7.1~15.6.30) ~ 제45기(16.1.1~16.12.31)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치임

#### 기재상의 주의

주1)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제24조의2(경영지도), 제24조의3(경영관리)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제14조(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주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주3) 기타 법규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

◆ 적기시정조치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